

THE WEALTH GUIDE

2025 Vol.03



Part.1 세무

아트 세테크와 최신 트렌드

아트 세테크와 최신 트렌드

한화생명 신은영 세무사

eyshin@hanwha.com

(작성일 : 2025.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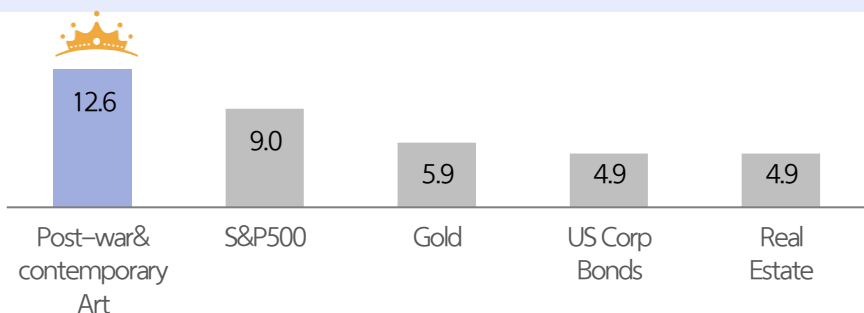
Summary

-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안전한 대체투자처로 아트테크(Art-Tech)가 새로운 재테크 트렌드로 부상
- 개인이 미술품 투자시 취득·보유·매매시 세제상 이점이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미술품 취득비용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어 아트 세테크로의 활용 가능성 높음
- 한편, 미술품 조각투자에 관한 세법규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예고로 미술금융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아트테크(Art-Tech),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

- 미국 씨티은행의 세계아트마켓 차트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2년까지 S&P500의 연간 평균 수익률이 9%를 보인 반면, 전후 현대미술(Post-war & contemporary art) 투자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은 12.6퍼센트에 이릅니다.
- 다른 자산 시장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2022년에도 세계적 경매 회사인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미국 뉴욕 미술품 판매액은 25억 달러(약 3조 2천억원)를 넘어, 예술 작품의 안정적 투자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림.
- 경기 상황에 크게 흔들림 없이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예술작품 투자에 관심이 몰리면서 미술품은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

투자대상별 연평균 수익률 비교 (1995-2022) (단위: %)



* 자료 : 마스터웍스 <https://www.masterworks.com>

개인이 미술품 취득시, 취득세·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대상 제외

-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액이 특정금액 이상이라면 추가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발생
- 또한, 부동산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보험료 계산에서 고려되는 재산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 한편,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산정시 고려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적인 세금 부담과 건강보험료 미발생**

부동산 vs 미술품 취득 보유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비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동산	부담	부담	기본공제금액 초과시 부담	재산보험료 계산시 포함
미술품	부담 없음			

개인이 미술품 양도시, 필요경비 80~90%인정 & 타소득과 합산 배제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미술품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국내 생존 작가의 미술품을 제외한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하므로 국내 생존 작가의 경우는 양도가액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조: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함)
- 작고한 국내 작가이거나 해외 작가의 작품으로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 때, 양도가액 1억원까지는 양도가액의 90%, 1억원 초과분부터는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작가양도가액 기준별 필요경비율		
구분	양도가액 기준	필요경비율
국내 생존 작가	금액 요건 없이 비과세	
국내 작고한 작가 또는 해외 작가	6천만원 미만	비과세
	1억원이하	양도가액의 90%
	~1억원	양도가액의 90%
	1억원초과 1억원 초과분	양도가액의 80% (단,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90%)

- 한편,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투자자의 작품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90% 전액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경비 공제후 22%(단일세율) 적용하여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되며 납세의무는 종결
- 결론적으로, 미술품 양도는 필요경비율과 기타소득세율을 감안하면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2.2~4.4%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투자자의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투자 상품과의 세부담 측면에서 우위 차지

투자자산별 양도시 세금 비교 (양도가액 1억원기준)

구분	미술품 (10년이상 보유)	주택 (2년 미만 보유)	비상장주식	펀드 (기준가격)
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	6천만원			
양도차익	4천만원			
과세표준	1천만원 (필요경비 공제액 = 1억원 x 90%)	4천만원	3,750만원 (기본공제 = 연간250만원)	4천만원
세율	22%	66%	22%	15.4%
세금	220만원	2,640만원	825만원	616만원
실효세율	2.2%	26.4%	8.25%	6.16%

사업자가 미술품 취득시, 법인사업자는 일부 비용 처리 가능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상 장식 또는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와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인 경우, 그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미술품에 대한 비용처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구입하더라도 **비용처리 원칙적 불가**
- 최근 개인병의원 대상으로 미술품 고가 렌탈료를 경비 처리하여 세법상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본다면, 해당 지출은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자별 미술품 취득시 비용 처리 여부

구분	비용 인정 요건
법인사업자	· 장식·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 ·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할 것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일 것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비용처리 규정 없음 (단, 미술품 렌탈비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속도 붙은 STO법제화, 미술시장의 토큰증권 (STO: 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투자계약증권

- 미술품 조각투자란 플랫폼을 통해 작품 소유권을 분할하여 다수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조각투자를 통해 매각 이익·대여 또는 전시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어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미술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23년 12월 15일 미술 작가 ‘쿠사마 야오이’의 2001년작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한 미술품 조각투자의 첫 투자계약증권 투자 사례 이후, 현재까지 미술품 조각투자상품이 연달아 출시 되었으나 줄줄이 흥행에 실패
- 그 실패의 원인으로 투자계약증권은 전자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 시장에 상장할 수 없고, 조각투자 지분을 유통할 수 있는 거래소가 현재까지 없어 조각투자 후 중도 매도가 불가능한 점을 꼽고 있음.
-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STO)이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주목**받으면서 토큰증권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으며, 이는 미술계에서도 기존의 미술품 거래와 미술품 조각투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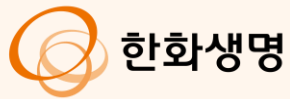
미술시장의 STO 관련 세법개정안 통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 미술품 조각투자제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미술품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게 됨.
- 즉,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 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해당 이익 전액의 15.4%를 원천징수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
- 또한, 미술품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 비과세 및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연간 금융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따르므로 실물 미술품 투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음.



미술품 실물투자 vs 조각투자 차이 요약

구분	미술품 실물투자	미술품 조각투자
투자금액	상대적으로 높음	소액으로 투자 가능
과세대상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과세형태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연간 이익기준 2천만원 여부에 따라 결정)
세율	22% (단일세율)	15.4%~49.5% (누진세율)
비과세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비과세 · 필요경비 인정	해당사항 없음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해당사항 없음	부과 대상 (소득월액에 포함)
미술품취득시 (사업자) 비용 인정 여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정부분 비용 인정	해당사항 없음



필수안내사항

-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한화생명보험(주)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주)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주)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